2021년도 제4차 이사회 회의록

1. **소집 통지일** : 2021. 06. 09 (수)

2. **개 최 일 시** : 2021. 06. 22 (화) 14 : 00

3. **개 최 장 소** : 다비다의집 5층 대표이사실

4. **총 임 원 수** : 이사 8명, 감사 2명

5. **참석 임원수** : 이사 6명
 윤 대표이사, 윤 이사, 오 이사, 김 이사, 임 이사
 고 이사

6. **의 안** :
 1. 법인임원(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 심의

의사경과 요령 및 의안의 결의 결과

의장 윤 : 이른 더위에 임원 여러분들의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법인 정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족수에 달하는 이사들이 출석하였으므로 2021년도 제4차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1호 의안) '법인임원(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 심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윤 : 우리법인 임원(감사)이신 신 감사님의 임기가 오는 2021. 06. 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 제7항 『감사는 이사와 제

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감사인 선임 대상 사회복지법인의 규모) 『법 제1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이란 감사 선임 당시 법인(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다)의 직전 3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에 따른 세입의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인은 시청에 외부감사 추천 요청공문 (2021.05.10 천성원-292)을 보내고, 시청에서 감사후보자 추천 통보공문(2021.05.18 시청 장애인복지과-6150)을 회신 받았습니다. 감사후보자는 현재 법인에 임원(감사)으로 계신 신 후보자님이시며, 신 후보자님께서 하실 의양이 있으시다는 확답을 듣고 범죄경력조회를 실시(2021.06.21) 한 결과 성범죄경력 및 범죄경력에 없음이라는 통보를 받아 임원 자격의 제한은 없었습니다. 감사후보자의 이력은 미리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신 감사후보자의 선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자 격	범죄경력조회
신	19	신 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해당자료없음

이사 김 : 신 후보자님께서는 2년 동안 성실히 직무를 수행 해 오셨기에, 감사로 선임하여 임무를 성실히 수행 해 주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사 윤 : 김 이사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사 고 : 재청합니다.

의장 윤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신 감사후보자 선임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석이사 이의 없다 답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1호 의안) '법인임원(감사) 임기만료에 따른 선임 심의'** 안건은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폐회 동의 후 폐회 선언하다. (폐회시간은 14:20)

위 이사회의 결의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기명날인하다.

2021년 6월 22일

사회복지법인 천 성 원

대 표 이 사 윤)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이 사 임)